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나37177(본소), 2021나37184(반소) 판결
[대여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와이 담당변호사 최영식

변 론 종 결 2022. 8. 31.

판 결 선 고 2022. 10. 19.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단5112495(본소),
2020가단41338(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086,411원과 그 중 15,433,600원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
5,652,811원에 대하여 201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2,893,970원과 그 중 19,235,354원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23,658,616원에 대하여 2019. 3. 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 제4면 제15행, 제5면 제11행의 각 “2002. 4. 14.”을 각 “2002. 12.
30.”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부터 제3면 제5행까지의 ‘1.기초사실 다. 부분’을 다음 과 같이 고친다.
“다. ① 이 사건 대여금1과 관련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22.부터 2019.
11. 15.까지 53회에 걸쳐서 합계 87,6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 금원 중 73,033,600원을
약정이율인 연 36%의 비율에 따라서 발생한 이자의 변제에 지정하여 충당하는 한편, 나머지 금원
14,566,400원(= 87,600,000원 - 73,033,600원)을 원금의 변제에 지정하여 충당하고, ② 이 사건
대여금2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3. 3. 6.부터 2019. 3. 8.까지

48회에 걸쳐서 합계 74,364,5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 금원 중 53,017,311원을 약정이율인 연 39%의 비율에 따라서 발생한 이자의 변제에 지정하여 충당하는 한편, 나머지 금원 21,347,189원(= 74,364,500원 - 53,017,311원)을 원금의 변제에 지정하여 충당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같은 면 제12행까지의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을 “각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대여금1과 관련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87,6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 금원 중 73,033,600원을 약정이율인 연 36%의 비율에 따라서 발생한 이자의 변제에 지정하여 충당하는 한편, 나머지 금원 14,566,400원을 원금의 변제에 지정하여 충당하고, ② 이 사건 대여금2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74,364,5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 금원 중 53,017,311원을 약정이율인 연 39%의 비율에 따라서 발생한 이자의 변제에 지정하여 충당하는 한편, 나머지 금원 21,347,189원을 원금의 변제에 지정하여 충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1에 관하여는 15,433,600원(= 30,000,000원 - 14,566,400원), 이 사건 대여금2에 관하여는 5,652,811원(= 27,000,000원 - 21,347,189원)이 각 원금의 일부로서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태영, 판사 선의중, 판사 황중연

(별지 1)

대출금 명세표

대출일자 2013. 1. 22 원금: 30,000,000 이율 연 36% (월 3%)

일 자	입금액	이자납부		원금상환	발생이자		미수이자	대출잔액	비고
		당해월	금 액		개월수	금액			
2013 1. 22	1,800,000	2013. 1~2월	1,800,000					30,000,000	
3월	900,000	3월	900,000						
4월	900,000	4월	900,000						
5월	900,000	5월	900,000						
6월	900,000	6월	900,000						
7. 2	900,000	7월	900,000						
8. 6	900,000	8월	900,000						
10. 9	900,000	9월	900,000						
11. 13	900,000	10월	900,000						
12. 12	900,000	11월	900,000						
2014 1. 23	900,000	12월	900,000						
3. 3	900,000	2014. 1월	900,000						
3. 31	900,000	2월	900,000						
4. 25	900,000	3월	900,000						
6. 13	900,000	4월	900,000						

대출일자 2013. 1. 22 원금: 30,000,000 이율 연 36% (월 3%)

일 자	입금액	이자납부		원금상환	발생이자		미수이자	대출잔액	비고
		당해월	금 액		개월수	금액			
7. 15	900,000	5월	900,000						
8. 14	900,000	6월	900,000						
9. 2	900,000	7월	900,000						
10. 16	1,800,000	8~9월	1,800,000						
12. 24	1,800,000	10~11월	1,800,000						
2015 2. 23	900,000	2014. 12월	900,000						
4. 8	1,800,000	2015. 1~2월	1,800,000						
6. 25	900,000	3월	900,000						
7. 31	900,000	4월	900,000						
8. 31	900,000	5월	900,000						
9. 28	900,000	6월	900,000						
10. 26	900,000	7월	900,000						
11.22	900,000	8월	900,000						
2016 1. 8	900,000	9월	900,000						
2. 3	900,000	10월	900,000						
3. 10	1,800,000	11~12월	1,800,000						
3. 23	900,000	2016. 1월	900,000						
5. 16	1,800,000	2~3월	1,800,000						

대출일자 2013. 1. 22 원금: 30,000,000 이율 연 36% (월 3%)

일 자	입금액	이자납부		원금상환	발생이자		미수이자	대출잔액	비고
		당해월	금 액		개월수	금액			
9. 2	900,000	4월	900,000						
9. 25	900,000	5월	900,000						
9. 27	1,800,000	6~7월	1,800,000						
9. 29	900,000	8월	900,000						
11. 28	900,000	9월	900,000						
2017 2. 15	1,800,000	2016. 10~11월	1,800,000						
5. 2	3,600,000	2017.12월 ~ 2018. 3월	3,600,000						
8. 31	2,700,000	2018. 4~6월	2,700,000						
12. 30	1,800,000	7~8월	1,800,000						
2018 4. 17	1,800,000	9~10월	1,800,000						
4. 27	1,800,000	11~12월	1,800,000						
6. 30	1,800,000	2018. 1~2월	1,800,000						
8. 31	1,800,000	3~4월	1,800,000						
		2018.5~2019.3			11	9,900,000	9,900,000		
2019 3. 29	6,000,000		6,000,000				3,900,000		
		2019.4월			1	900,000	4,800,000		
4. 30	3,000,000		3,000,000				1,800,000		
		2019.5월			1	900,000	2,700,000		

대출일자 2013. 1. 22 원금 30,000,000 이율 연 36% (월 3%)

일 자	입금액	이자납부		원금상환	발생이자		미수이자	대출잔액	비고
		당해월	금 액		개월수	금액			
5.15 5.31	6,000,000		2,700,000	3,300,000				26,700,000	
		2019.6월			1	801,000	801,000		
6. 27	3,000,000		801,000	2,199,000				24,501,000	
		2019.7월			1	735,030	735,030		
7. 15	6,000,000		735,030	5,264,970				19,236,030	
		2019.8월			1	577,080	577,080		
		2019.9월			1	577,080	1,154,160		
2019 9. 17	3,000,000		1,154,160	1,845,840				17,390,190	
		2019.10월			1	521,705	521,705		
		2019.11월			1	521,705	1,043,410		
2019 11. 15	3,000,000		1,043,410	1,956,590				15,433,600	
계	87,600,000		73,033,600	14,566,400					

(별지 2)

대출금 명세표

대출일자 2013. 3. 6 금액 : 27000000 이율 연 39% (월 3.25%)

일 자	입금액	이자납부		원금상환	발생이자		미수이자	대출잔액	비고
		당월	금 액		개월수	금액			
2013. 3. 6	1,755,000	2013. 3~4월	1,755,000					27,000,000	
5. 11	877,500	5월	877,500						
6. 14	877,500	6월	877,500						
7. 16	877,500	7월	877,500						
8. 16	877,500	8월	877,500						
9. 12	877,500	9월	877,500						
10. 20	877,500	10월	877,500						
11. 25	877,500	11월	877,500						
12. 31	877,500	12월	877,500						
2014. 2. 20	877,500	2014. 1월	877,500						
3. 12	877,500	2월	877,500						
3. 31	877,500	3월	877,500						
5. 14	877,500	4월	877,500						
6. 30	877,500	5월	877,500						
8. 14	877,500	6월	877,500						
9. 2	877,500	7월	877,500						
9. 25	877,500	8월	877,500						
10. 16	877,500	9월	877,500						
12. 24	1,755,000	10~11월	1,755,000						

대출일자 2013. 3. 6 금액: 27000000 이율 연 39% (월 3.25%)

일 자	입금액	이자납부		원금상환	발생이자		미수이자	대출잔액	비고
		당해월	금 액		개월수	금액			
2015. 2. 23	877,500	2014. 12월	877,500						
5.13	1,755,000	2015. 1~2월	1,755,000						
6. 25	877,500	3월	877,500						
7. 31	877,500	4월	877,500						
8. 31	877,500	5월	877,500						
9. 28	877,500	6월	877,500						
10. 26	877,500	7월	877,500						
11. 22	877,500	8월	877,500						
2016. 1. 8	877,500	9월	877,500						
2. 3	877,500	10월	877,500						
3. 10	1,755,000	11~12월	1,755,000						
3. 23	877,500	2016. 1월	877,500						
5. 16	1,755,000	2~3월	1,755,000						
5. 30	9,000,000			9,000,000				18,000,000	
9. 2	877,000	4월	877,000						
9. 25	585,000	5월	585,000						
9. 27	1,170,000	6~7월	1,170,000						
9. 29	585,000	8월	585,000						
11. 28	585,000	9월	585,000						
2017. 2. 15	1,170,000	2016. 10~11월	1,170,000						
5. 2	2,320,000	2016. 12~17. 3월	2,320,000						
8. 31	1,755,000	2017. 4~6월	1,755,000						

대출일자 2013. 3. 6 금액: 27000000 이율 연 39% (월 3.25%)

일 자	입금액	이자납부		원금상환	발생이자		마수이자	대출잔액	비고
		당해월	금 액		개월수	금액			
12. 5	1,755,000	7~9월	1,755,000						
2018. 6. 1	1,755,000	10~12월	1,755,000						
6. 30	2,340,000	2018. 1~4월	2,340,000					18,000,000	
		2018.5~9월 (5개월)			5	2,925,000	2,925,000		
		10월(1개월)			1	585,000	3,510,000		
2018. 10. 19	6,000,000		3,510,000	2,490,000				15,510,000	
		11월(1월)			1	504,075	504,075		
		12월(1개월)			1	504,075	1,008,150		
		2019.1월(1개월)			1	504,075	1,512,225		
2019. 1. 31	6,000,000		1,512,225	4,487,775				11,022,225	
		2019.2월(1개월)			1	358,222	358,222		
2019. 2. 28	3,000,000		358,222	2,641,778				8,380,447	
		2019.3월(1개월)			1	272,364	272,364		
2019. 3. 8	3,000,000		272,364	2,727,636				5,652,811	
계	74,364,500		53,017,311	21,347,189					

